



특허청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19년 하반기 국제출원 소식지

2019. 12

Contents

I.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 소식

II. 마드리드(Madrid) 국제출원 소식

III. 헤이그(Hague) 국제출원 소식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 소식

특허협력조약
(PCT)
국제출원

1. 신규 체약국
2. PCT 동맹 총회
3. WIPO IP 포털 출시
4. 국제사무국, 특정 팩스 서비스 유지 예정
5. 특정 PCT 규칙과 국내법 간 상충사실에 대한 통지의 철회
6. 수수료 변경
7. 특정국의 휴무 정보
8. ePCT 업데이트
9. 주요국 정보 업데이트
10. 수수료 납부 요청에 관한 주의사항
11. PCT 시스템 가입국

1 신규 체약국

□ 사모아(국가코드: WS)

- 사모아는 PCT 가입서를 기탁(2019. 10. 2.)함으로써 153번째 PCT 체약국이 되었습니다.
- 2020. 1. 2.부터 PCT 규정에 기속되며, 2020. 1. 2. 이후에 출원되는 모든 국제출원에는 자동적으로 사모아가 함께 지정됩니다.
- 또한, 사모아는 PCT 제2장의 규정에 기속되는 국가로 2020. 1. 2. 이후에 출원되는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국제예비 심사청구서에 사모아가 자동적으로 선택됩니다.

2 PCT 동맹 총회

□ PCT 규칙 개정안 채택

- 이번 PCT 총회에서는 아래 내용들이 포함된 PCT 규칙 개정안이 채택되었습니다.(문서 PCT/A/51/2의 부속서에 기재)
- PCT 규칙 82의4: 불시의 정전이나 예정된 정비 등의 이유로 관청에서 허용한 전자적 통신 수단의 이용이 불가능하여 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면책 근거로 사용됩니다.
- PCT 규칙 26의4: PCT 규칙 4.11에 규정된 출원서의 표시사항을 보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입니다. 국제출원이 지정국에서 추가특허, 추가증, 추가발명자증 또는 추가실용증을 위한 출원 또는 선출원의 계속출원 또는 일부계속출원으로 처리되기를 희망하는 내용의 표시에 대해 보정, 추가하길 원하는 경우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신청서 제출 가능합니다.

- PCT 규칙 4, 12, 20, 40의2, 48, 51의2, 55 및 82의3: 국제출원에서 잘못 제출된 요소나 부분의 경우, 잘못 제출된 요소나 부분을 올바른 것으로 교체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PCT 규칙 20.5의2 "잘못 제출된 요소 및 부분(Erroneously Filed Elements and Parts)"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PCT 규칙 15, 16, 57 및 96: 한 관청에서 다른 관청 대신 접수한 수수료를 국제사무국을 통해 전달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 PCT 규칙 71 및 94: 국제예비심사기관이 보유한 특정 서류의 사본을 국제사무국으로 송부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입니다. 상기 사본은 국제사무국이 선택관청을 대신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 본 개정안은 2020. 7. 1. 발효 예정입니다.

3 WIPO IP 포털 출시

□ WIPO 통합 온라인 서비스 포털

- WIPO의 여러 온라인 서비스를 통합하고 사용자 이용 편의를 높인 WIPO IP 포털 서비스가 출시(2019. 9. 17.)되었습니다.
 - WIPO IP 포털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서비스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 "주요 PCT 기한(Key PCT time limits)" 위젯을 통해 공개 예정인 국제출원, 지정해 놓은 기간(주 단위)에 도달하는 국제출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 "ePCT 에서 처리 중인 항목(ePCT Pending Items)" 위젯을 통해 초안 작성 후 제출 대기 중인 국제출원 확인 가능합니다.
 - 모든 WIPO 서비스에 대해 메시지 기능을 일원화하여, 여러 WIPO 서비스의 메시지를 한 곳에서 수신 가능합니다.

- 현재는 메시지 기능에 WIPO IP 포털 메시지와 ePCT 알림(조회 시 강력인증 필요)에 한정되어 있으나 점차 다른 서비스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4 국제사무국, 특정 팩스 서비스 유지 예정

□ 제한적 팩스 서비스 유지 결정

- WIPO는 회원국과의 협의를 거쳐 2019. 12. 31.부터 PCT 팩스 서비스 제공을 종료할 것임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 발표 이후 PCT 사용자 등이 PCT 팩스 서비스 종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여,
 - 국제사무국은 팩스 서비스 전면 중단은 하지 않기로 하고, 비상시에 한하여 팩스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국제사무국에 문서를 제출 시 ePCT를 이용하거나 ePCT 이용이 어려운 경우 비상용 업로드 서비스(Contingency Upload Service)를 이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 팩스 수령 확인에 따른 별도의 확인증은 발송되지 않으나, 수신한 팩스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 팩스 전송 시간이 국제사무국의 정규 업무시간(9:00-18:00, 중앙유럽 표준시(CET))이면, 팩스를 보내기 전에 먼저 해당 PCT 서식에 기재된 "담당 직원(authorized officer)"에게 전화를 걸어 팩스를 전송할 것임을 알려줄 것을 권장하며, 비업무시간인 경우에는 자동응답기에 메시지를 남겨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국제출원 및 국제출원의 보정을 포함하는 대체용지의 경우, 팩스 송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문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출원인은 ePCT를 통해 본인의 국제출원 현황을 모두 조회 가능하므로 ePCT 기능을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5

특정 PCT 규칙과 국내법 간 상충 사실에 대한 통지의 철회

- **노르웨이(PCT 규칙 26 의 2.3(j), 49 의 3.1(g) 및 49 의 3.2(h))**
 - 수리관청 및 지정관청(또는 선택관청)으로서의 노르웨이 특허청은 국내법과의 상충사실에 대한 통지를 2019. 7. 1. 자로 철회합니다.
 - 2019. 7. 1. 이후 국내단계에 진입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국제출원에 대한 우선권회복 신청을 검토하고 필요조건이 충족된 경우, 수리관청의 역할을 수행하는 타 관청이 내린 우선권회복 결정을 수용합니다.
 - 우선권회복 신청에 대한 처리기준은 "비고의적" 기준을 적용하며, 신청료는 NOK 3,000 입니다.

- **캐나다(PCT 규칙 49의3.1(g))**
 - 지정관청(또는 선택관청)으로서의 캐나다 특허청은 국내법과의 상충사실에 대한 통지를 2019. 10. 30. 자로 철회합니다.
 - 2019. 10. 30. 이후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수리관청에 의한 우선권회복의 효과와 관련한 상기 PCT 규칙이 캐나다 특허청에 적용됩니다.

6

수수료 변경

- **일본(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수수료)**
 -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일본 특허청은 2019. 9. 1.부터 아래의 조건에 따라 국제조사료 및 국제예비심사료를 감면합니다.
 - 출원인이 중소기업, 교육기관인 경우 등으로, 일본어로 출원하거나, PCT 규칙 12.3에 의해 국제조사용 일본어 번역문을 제출한 경우

- 국제출원 시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출원하여야 하며, 일본 특허청이 감면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감면 대상인 경우 납부된 조사료를 규정에 따라 반환처리 합니다.

□ 대한민국(지정관청 수수료)

- 2019. 7. 9.부터, 대한민국특허청에서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국제 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된 경우, 국내단계에서 납부하는 심사 청구료의 70%를 감면합니다.

7 특정국의 휴무 정보

□ 필리핀특허청

- 2019. 7. 31.부터 8. 2.까지 휴무입니다.
 - 해당 청의 워크숍 진행 일정으로 특허청 업무를 공식 중단됩니다.
 - 상기 기간에 만료되는 제출 또는 납부기한은 **2019. 8. 5.**입니다.

□ 싱가포르특허청

- 2019. 7. 26.부터 7.30.까지 휴무입니다.
 - 해당 청의 이전으로 인해 특허청 업무를 공식 중단됩니다.
 - 상기 기간에 만료되는 제출 또는 납부기한은 **2019. 7. 31.**입니다.

8 ePCT 업데이트

□ ePCT(버전 4.6) 신규 버전 배포

- WIPO IP 포털 출시의 일환으로 ePCT(버전 4.6) 신규 버전이 배포되었습니다.

- 기존 ePCT 로그인 페이지가 WIPO IP 포털 로그인 페이지로 변경되었으나, 기존 ePCT에서 사용하던 것과 동일한 WIPO 계정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가장 큰 변경사항 중 하나는 서열목록을 포함하는 출원입니다. 서열목록은 "문서(Documents)" 부분(기존 "검색(Search)" 부분)에 발명의 설명의 서열목록 부분으로 명시되며, 오직 국제조사만을 위한 것이라고 표시할 수 없습니다.
 - 향후 서열목록은 기본적으로 출원 시의 출원의 일부로 처리됩니다.
- * 서열목록은 텍스트 형식으로 제출(PDF 형식은 불허)

9 주요국 정보 업데이트

중국특허청

- 중국특허청의 이메일 주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pct_affairs@cnipa.gov.cn

10 수수료 납부 요청에 관한 주의사항

부당한 수수료 납부 요구 신규 사례

- WIPO 국제사무국에서 발행하지 않았으며, PCT 제도와 무관한 새로운 유형의 부당한 수수료 납부요구서가 발견되었습니다.
- "IPS - Intellectual Property Services"



Intellectual Property Services

REGISTRATION OF THE INTERNATIONAL PATENT

Contract Number: 1193504023

Sent Date: 04.09.2019



AI 2019/35

Applicant

IPS office s.r.o. Udička 700/19 602 00 Brno Czech Republic Tax number: 08029326
Provider

REGISTRATION DETAILS

Title:

Int. Class:

Int. Application No:

Publication Number:

Publication Date:

Int. Filing Date:



Registration Fee for 1193504023	1 929,00 EUR
Processing Fee	25,00 EUR
Total Registration Fee	1 954,00 EUR

Sign the document within 14 days and send it back by e-mail to office@ipservices.biz
or by mail to: **IPS office s.r.o., Lidická 700/19, 602 00 Brno, Czech republic.**

Registration of the International Patent:

The international patent has been published in the WIPOL-Gazette, which is edited by Bureau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is publishing forms the basis of our offer. Please note, registration is not affiliated with the publication of the official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 registration and is not a registration by a government entity. By signing this Agreement, the Applicant signs a binding "IPS Registration" service provided by the provider specified in the GTS article 3 paragraph 1 and undertakes to pay the provider the price stated on this form. Given that this form is exclusively an offer for the conclusion of a contract,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created by this contract arises at the moment of the delivery of this contract to the provider. Effective delivery is deemed to be the delivery of the contract to the address of the provider and the delivery of the contract to the email address of the provider. By signing this contract, the Contracting Authority agrees that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is governed by the General Business Terms and Conditions of the Provider, which are listed on the other side of this form and are governed by the Act No. 89/2012 Coll. Civil Code. The Applicant declares that he has read and read these General Business Terms and the scope of the service provided, and he further declares that they agree with their wording.

Applicant

Provider

Date	Full name
Signature	



IPS office s.r.o., Lidická 700/19, 602 00 Brno, Czech Republic, Tax number: 08029326, www.ipservices.biz, info@ipservices.biz

47236017

- 국제공개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 않으며, 수수료 납부요구와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국제사무국에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41-22) 338 83 38
- 팩스: (+41-22) 338 83 39
- 이메일: pct.legal@wipo.int

11 PCT 시스템 가입국

□ PCT 가입 체약국 현황

- 2019. 12월 말 현재,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한 체약국은 153 개국입니다.

국가코드	국가명	국가코드	국가명
AE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KZ	카자흐스탄(Kazakhstan)
AG	앤티가 바부다(Antigua and Barbuda)	LA	라오스(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AL	알바니아(Albania)	LC	세인트루시아(Saint Lucia)
AM	아르메니아(Armenia)	LI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AO	앙골라(Angola)	LK	스리랑카(Sri Lanka)
AT	오스트리아(Austria)	LR	라이베리아(Liberia)
AU	호주(Australia)	LS	레소토(Lesotho)
AZ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LT	리투아니아(Lithuania)
BA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Bosnia and Herzegovina)	LU	룩셈부르크(Luxembourg)
BB	바베이도스(Barbados)	LV	라트비아(Latvia)
BE	벨기에(Belgium)	LY	리비아(Libya)
BF	브루키나파소(Burkina Faso)	MA	모로코(Morocco)
BG	불가리아(Bulgaria)	MC	모나코(Monaco)
BH	바레인(Bahrain)	MD	몰도바(Republic of Moldova)
BJ	베냉(Benin)	ME	몬테네그로(Montenegro)
BN	브루나이(Brunei Darussalam)	MG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BR	브라질(Brazil)	MK	북마케도니아(North Macedonia)
BW	보츠와나(Botswana)	ML	말리(Mali)
BY	벨라루스(Belarus)	MN	몽골(Mongolia)
BZ	벨리즈(Belize)	MR	모리타니(Mauritania)
CA	캐나다(Canada)	MT	몰타(Malta)

CF	중앙아프리카공화국(Central African Republic)	MW	말라위 (Malawi)
CG	콩고(Congo)	MX	멕시코 (Mexico)
CH	스위스(Switzerland)	MY	말라위 (Malawi)
CI	코트디부아르(Côte d'Ivoire)	MZ	모잠비크(Mozambique)
CL	칠레(Chile)	NA	나미비아(Namibia)
CM	카메룬(Cameroon)	NE	니제르(Niger)
CN	중국(China)	NG	나이지리아(Nigeria)
CO	콜롬비아(Colombia)	NI	니카라과(Nicaragua)
CR	코스타리카(Costa Rica)	NL	네덜란드(Netherlands)
CU	쿠바(Cuba)	NO	노르웨이(Norway)
CY	키프로스(Cyprus)	NZ	뉴질랜드(New Zealand)
CZ	체코(Czechia)	OM	오만(Oman)
DE	독일(Germany)	PA	파나마(Panama)
DJ	지부티(Djibouti)	PE	페루(Peru)
DK	덴마크(Denmark)	PG	파푸아뉴기니
DM	도미니카(Dominica)	PH	필리핀(Philippines)
DO	도미니카 공화국(Dominican Republic)	PL	폴란드(Poland)
DZ	알제리(Algeria)	PT	포르투갈(Portugal)
EC	에콰도르(Ecuador)	QA	카타르(Qatar)
EE	에스토니아(Estonia)	RO	루마니아(Romania)
EG	이집트(Egypt)	RS	세르비아(Serbia)
ES	스페인(Spain)	RU	러시아(Russian Federation)
FI	핀란드(Finland)	RW	르완다(Rwanda)
FR	프랑스(France)	SA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GA	가봉(Gabon)	SC	세이셸(Seychelles)
GB	영국(United Kingdom)	SD	수단(Sudan)
GD	그레나다(Grenada)	SE	스웨덴(Sweden)
GE	조지아(Georgia)	SG	싱가포르(Singapore)

GH	가나(Ghana)	SK	슬로바키아(Slovakia)
GM	감비아(Gambia)	SL	시에라리온(Sierra Leone)
GN	기니(Guinea)	SM	산마리노(San Marino)
GQ	적도기니(Equatorial Guinea)	SN	세네갈(Senegal)
GR	그리스(Greece)	ST	상투메프린스(Sao Tome and Principe)
GT	과테말라(Guatemala)	SV	엘살바도르(El Salvador)
GW	기니비사우(Guinea Bissau)	SY	시리아(Syrian Arab Republic)
HN	온두라스(Honduras)	SZ	에스와티니(Eswatini)
HR	크로아티아(Croatia)	TD	차드(Chad)
HU	헝가리(Hungary)	TG	토고(Togo)
ID	인도네시아(Indonesia)	TH	태국(Thailand)
IE	아일랜드(Ireland)	TJ	타지키스탄(Tajikistan)
IL	이스라엘(Israel)	TM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
IN	인도(India)	TN	튀니지(Tunisia)
IR	이란(Iran)	TR	터키(Turkey)
IS	아이슬란드(Iceland)	TT	트리니다드토바고(Trinidad and Tobago)
IT	이탈리아(Italy)	TZ	탄자니아(United Republic of Tanzania)
JO	요르단(Jordan)	UA	우크라이나(Ukraine)
JP	일본(Japan)	UG	우간다(Uganda)
KE	케냐(Kenya)	US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KG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UZ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KH	캄보디아(Cambodia)	VC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KM	코모로(Comoros)	VN	베트남(Viet Nam)
KN	세인트키츠네비스(Saint Kitts and Nevis)	WS	사모아(Samoa)
KP	북한(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ZA	남아프리카공화국(South Africa)
KR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ZM	잠비아(Zambia)
KW	쿠웨이트(Kuwait)	ZW	짐바브웨(Zimbabwe)
SI	슬로베니아(Slovenia)		

마드리드(Madrid) 국제출원 소식

마드리드
(Madrid)
국제출원

1. 마드리드 가입 회원국 및 선언사항
2. 마드리드 회원국 변동 사항
3. 수수료 관련 변경 사항
4. 기타
5.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당사자 현황

□ 브라질(Brazil) - 2019. 10. 2. 발효

○ 105번째 마드리드 프로토콜 회원국이 되었으며,

○ 선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드리드 의정서 Articles 5(2)(b), 5(2)(c)에 따라 가거절통지 기한은 국제사무국의 지정국 통지일로부터 18개월 이내이며, 이후 이의 신청에 의한 가거절통지가 가능합니다.

- Article 8(7)(a)에 따라 개별수수료를 부과하며, 마드리드 공통규칙 Rule 34(3)(a)에 따라, 국제출원 또는 사후지정 신청 시 1차 납부하고 브라질 법령에 따른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2차 납부해야 합니다.

☞ 금액은 https://www.wipo.int/madrid/en/fees/ind_taxes.html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Article 14(5)에 따라 2019. 10. 2. 이전의 국제등록에 대해서는 보호 확대(사후지정)가 불가능합니다.

- Rule 17(5)(d)에 따라 국제사무국에 통지된 가거절은 권리자의 재심사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심사에 관한 결정은 추가적 재심사 또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Rule 20bis(6)(b)에 따라 국제등록에 관련된 라이선스는 브라질의 국내등록부에 등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Rule 27bis(6) 및 27ter(2)(b)에 따라, 브라질 국내법이 상표등록의 분할 및 병합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국제사무국에 분할신청서·병합신청서를 송부하지 않습니다.

☞ 출처: https://www.wipo.int/edocs/madrdocs/en/2019/madrid_2019_53.pdf

□ 말레이시아(Malaysia) – 2019.12.27일 발효 예정

- 106번째 마드리드 프로토콜 회원국이 되었으며,
- 선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드리드 의정서 Articles 5(2)(b), 5(2)(c)에 따라, 가거절통지 기한은 국제사무국의 지정국 통지일로부터 18개월 이내이며, 이후 이의 신청에 의한 가거절통지가 가능하고,
 - Article 8(7)(a)에 따른 개별수수료를 부과하며, (출원/사후지정 시 매 분류마다 259(CHF)/1분류; 갱신 236(CHF))를 부과
 - 마드리드 공통규칙 Rule 7(2)에 따라 국제출원 또는 사후지정 신청 시 사용의사선언이 요구됩니다.
(MM2의 11번 항목, MM4의 4번 항목의 주석에 “말레이시아를 지정함으로써 출원인/권리자는 해당 표장을 국제출원 또는 사후지정에 명시된 상품(서비스)과 관련해 말레이시아에서 사용할 것임을 선언한다”는 내용이 추가될 예정)
 - Rule 20bis(6)(b)에 따라 국제등록부의 라이선스는 효력이 없으므로, 말레이시아 국내등록부에 등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출처 : https://www.wipo.int/edocs/madrdocs/en/2019/madrid_2019_58.pdf

2 마드리드 회원국 변경 사항

□ 뉴질랜드(New Zealand)

- 마드리드 공통규칙 Rule 40(6)에 따른 통지를 철회하였습니다.
 - 따라서 2019. 3. 21부터 공통규칙 Rule 27bis(1)에 따른 국제등록의 분할 및 Rule 27ter(2)(a)에 따른 분할 후 국제등록 병합에 대한 신청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출처 : https://www.wipo.int/edocs/madrdocs/en/2019/madrid_2019_51.pdf

□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 2019. 8. 3. 부터 미국(령)내 영주권(permanent legal residence)이 없는 경우 미국특허청(USPTO) 및 미국상표심판위원회(TTAB: 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에 산업재산권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 대리인(U.S.-licensed attorneys)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국제등록명의인이 USPTO에 직접 절차를 진행할 때(예를 들어, 직권 및 이의신청에 의한 가거절통지에 대해 대응하거나 등록결정 이후 USPTO에 직접 상거래사용진술서(Affidavits of Continued use in Commerce) 등을 제출할 때) 반드시 미국 현지 등록대리인을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으나,
- WIPO 국제사무국과의 절차 진행(마드리드 국제출원 또는 사후지정 신청, 국제등록의 갱신, 국제등록부 정보 변경 신청 등)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출처 : https://www.wipo.int/edocs/madrdocs/en/2019/madrid_2019_52.pdf

□ 독일(Germany)

- 독일특허청은 Rule 20*bis*(6)(a)에 따른 통지를 철회하였습니다.
- 따라서 2019. 8. 8부터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라이선스는 독일 국내 등록부에 등재된 것과 같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출처 : https://www.wipo.int/edocs/madrdocs/en/2019/madrid_2019_55.pdf

□ 스위스(Switzerland)

- 스위스특허청은 Rule 34(2)(b)에 따른 통지를 철회하였습니다.
- 따라서 2020. 1. 1 부터 마드리드 의정서 공통규칙에 따른 수수료를 직접 수령하지 않으며, 더불어 국제사무국에 송금하지도 않습니다.

☞ 출처 : https://www.wipo.int/edocs/madrdocs/en/2019/madrid_2019_56.pdf

□ 터키(Turkey)

- 터키 정부는 마드리드 의정서 Article 14(5)에 따른 선언을 철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 따라서 2019. 10. 18 부터, 1999. 1. 1 이전에 발효된 국제등록을 포함한 모든 국제등록에 대해 사후지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이전에는 터키의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1999.1.1)이전의 국제등록에 대해서는 사후지정이 불가능함

☞ 출처 : https://www.wipo.int/edocs/madrdocs/en/2019/madrid_2019_59.pdf

□ 시리아(Syrian Arab Republic)

- 시리아 정부는 마드리드 공통규칙 Rule 27ter(2)(b) 및 40(6)에 따른 통지를 WIPO에 제출하였습니다.
 - 따라서 Rule 27bis(1) 및 27ter(2)(a)에 따른 국제등록의 분할 및 병합은 국내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해당 신청서를 접수하지도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지도 않습니다.

☞ 출처 : https://www.wipo.int/edocs/madrdocs/en/2019/madrid_2019_60.pdf

3 수수료 관련 변경 사항

□ 콜롬비아

- 2020.1.1일부터 마드리드 공통규칙 Rule 35(2)(b)에 따라 개별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구분		수수료 (단위 : CHF)	
		최초 분류(class)	분류 추가 시 (매 분류 마다)
출원 및 사후지정	일반표장	273	136
	단체·증명 표장	363	181
갱신	만료기간 내	149	73
	6개월의 유예기간	203	100

☞ 출처 : https://www.wipo.int/edocs/madrdocs/en/2019/madrid_2019_61.pdf

□ 뉴질랜드

- 2020.2.13일부터 마드리드 공통규칙 Rule 35(2)(b)에 따라 개별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구분	수수료 (단위 : CHF)
출원 및 사후지정	63 (매 분류마다)
갱신	126 (매 분류마다)

☞ 출처 : https://www.wipo.int/edocs/madrdocs/en/2019/madrid_2019_64.pdf

4 기타

□ Nice 분류 11판, 2020 버전 시행

- 2020. 1. 1 부터 Nice 분류 11판 2020버전이 적용됩니다.
 - 2020. 1. 1. 이후 본국관청(the Office of origin)이 접수하는 국제출원 및 본국관청의 접수일로부터 2개월을 경과하여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Bureau of WIPO)에 접수된 국제출원(마드리드 프로토콜 Article 3(4))에 적용되며,
 - 국제등록건의 지정통지, 국제등록증, 공보 등에 지정상품 옆에 “NCL(11-2020)”로 표시됩니다.
 - MGS(Madrid Goods and Services Manager)에도 2020 버전이 반영될 예정이며, 해당 데이터는 <https://www.wipo.int/classifications/nice/e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2020. 1. 1. 이전의 국제등록에 대해서는 2020버전으로 재분류하지는 않습니다.

☞ 출처 : https://www.wipo.int/edocs/madrdocs/en/2019/madrid_2019_57.pdf

□ 마드리드 국제등록 150만건 도달

- 마드리드 국제등록이 150만 건에 도달하였습니다.
 - 150만 번째 국제등록은 콜롬비아의 섬유제조업체 Coltejer의 "COLTEJER"라는 상표를 북미, 유럽 및 아시아 지역의 11개 국가를 지정한 출원이 해당되었습니다.
- WIPO는 마드리드 프로토콜 30주년 기념에서
 - 1988년 25개 회원국에서 2019년 106개 회원국으로 4배가 넘는 성장을 이루었고
 - 캐나다(Canada), 브라질(Brazil), 말레이시아(Malaysia)가 2019년 신규 가입회원국이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 출처 : https://www.wipo.int/portal/en/news/2019/article_0058.html

5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당사자 현황

□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당사자 현황

○ 2019. 12월 말 현재 마드리드의정서 체약당사자는 106개입니다.

국가코드	국가명	국가코드	국가명
AF	아프가니스탄(Afghanistan)	LA	라오스(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AG	앤티가 바부다(Antigua and Barbuda)	LI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AL	알바니아(Albania)	LR	라이베리아(Liberia)
AM	아르메니아(Armenia)	LS	레소토(Lesotho)
AT	오스트리아(Austria)	LT	리투아니아(Lithuania)
AU	호주(Australia)	LU	룩셈부르크(Luxembourg)
AZ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LV	라트비아(Latvia)
BA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Bosnia and Herzegovina)	MA	모로코(Morocco)
BE	벨기에(Belgium)	MC	모나코(Monaco)
BG	불가리아(Bulgaria)	MD	몰도바(Republic of Moldova)

BH	바레인(Bahrain)	ID	인도네시아(Indonesia)
BN	브루나이(Brunei Darussalam)	ME	몬테네그로(Montenegro)
BR	브라질(Brazil)	MG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BT	부탄(Bhutan)	MK	북마케도니아(North Macedonia)
BW	보츠와나(Botswana)	MN	몽골(Mongolia)
BY	벨라루스(Belarus)	MW	말라위(Malawi)
CA	캐나다(Canada)	MX	멕시코(Mexico)
CH	스위스(Switzerland)	MY	말레이시아(Malaysia)
CN	중국(China)	MZ	모잠비크(Mozambique)
CO	콜롬비아(Colombia)	NA	나미비아(Namibia)
CU	쿠바(Cuba)	NL	네덜란드(Netherlands)
CY	키프로스(Cyprus)	NO	노르웨이(Norway)
CZ	체코(Czech Republic)	NZ	뉴질랜드(New Zealand)
DE	독일(Germany)	OA	아프리카 지식재산권기구 (OAPI)
DK	덴마크(Denmark)	OM	오만(Oman)
DZ	알제리(Algeria)	PH	필리핀(Philippines)
EE	에스토니아(Estonia)	PL	폴란드(Poland)
EG	이집트(Egypt)	PT	포르투갈(Portugal)
EM	유럽연합(European Union)	RO	루마니아(Romania)
ES	스페인(Spain)	RS	세르비아(Serbia)
FI	핀란드(Finland)	RU	러시아(Russia)
FR	프랑스(France)	RW	르완다(Rwanda)
GB	영국(United Kingdom)	SD	수단(Sudan)
GE	조지아(Georgia)	SE	스웨덴(Sweden)
GH	가나(Ghana)	SG	싱가폴(Singapore)
GM	감비아(Gambia)	SI	슬로베니아(Slovenia)
GR	그리스(Greece)	SK	슬로바키아(Slovakia)
HR	크로아티아(Croatia)	SL	시에라리온(Sierra Leone)
HU	헝가리(Hungary)	SM	산마리노(San Marino)

ST	상투메프린스(Sao Tome and Principe)	KZ	카자흐스탄(Kazakhstan)
SY	시리아(Syrian Arab Republic)	SZ	에스와티니(Eswatini)
IE	아일랜드(Ireland)	TH	태국(Thailand)
IL	이스라엘(Israel)	TJ	타지키스탄(Tajikistan)
IN	인도(India)	TM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
IR	이란(Iran)	TN	튀니지(Tunisia)
IS	아이슬란드(Iceland)	TR	터키(Turkey)
IT	이탈리아(Italy)	UA	우크라이나(Ukraine)
JP	일본(Japan)	US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KE	케냐(Kenya)	UZ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KG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WS	사모아(Samoa)
KH	캄보디아(Cambodia)	VN	베트남(Viet Nam)
KP	북한(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ZM	잠비아(Zambia)
KR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ZW	짐바브웨(Zimbabwe)

헤이그(Hague) 국제출원 소식

헤이그
(Hague)
국제출원

1. 헤이그 신규 회원국 및 선언사항
2. 헤이그 회원국 변동 사항
3. 디지털 접근 서비스(DAS)의 확대
4. 헤이그협정 체약국 현황

1

헤이그 신규 회원국 및 선언사항

□ 베트남(Viet Nam) - '19. 12. 30. 발효

- '19. 9. 30. 가입으로 71번째 헤이그 협정서 회원국이 되었으며,
- 선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Article 5(2)(b)(ii)와 (iii)에 따라 디자인의 특징과 청구범위를 기술하여야 합니다.
- Article 11(1)(b)에 따라 공개연기가 불가능합니다.
- Article 13(1)에 따라 디자인의 단일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Rule 12(1)(b)(iii)에 따라 제3수준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단계별 수수료에 대해서는 별표 참조

<별표> 국제출원에 따른 수수료 기준

- 국제출원 수수료는 기본료, 공개료 외에도 각 지정국 수수료를 포함하며 지정수수료는 표준 지정수수료와 개별 지정수수료 중 계약국이 선언사항으로 선택함

구성		내용
표준 지정 수수료	<제1수준>	자국 관청이 실제 심사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계약당사자 - 1개 디자인당 42프랑, 같은 출원내 추가 디자인 1개당 2프랑
	<제2수준>	자국 관청이 신규성에 관한 것 이외의 실제 심사를 수행하는 계약 당사자 - 1개 디자인당 60프랑, 같은 출원내 추가 디자인 1개당 20프랑
	<제3수준>	자국관청이 직권으로 또는 제3자에 의한 이의신청에 따라 신규성에 관한 심사를 포함하여 실제 심사를 수행하는 계약당사자 - 1개 디자인당 90프랑, 같은 출원내 추가 디자인 1개당 50프랑
개별 지정수수료		OAPI, CA, EM, HU, JP, KG, KR, MD, RU, US 등 국가

□ 사모아(Samoa) - '20. 1. 2. 발효

- '19. 10. 2. 가입으로 72번째 헤이그 협정서 회원국이 되었으며,
- 선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Article 11(1)(a)에 따라 공개연기를 제한(최장 12개월)합니다.
- Article 17(3)(c)에 따라 국내법에 따른 최장 보호기간(15년)을 부여합니다.

□ 이스라엘(Israel) - '20. 1. 3. 발효

- '19. 10. 3. 가입으로 73번째 헤이그 협정서 회원국이 되었으며,
- 선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Article 4(1)(b)에 따라 수리관청을 통한 헤이그 출원은 금지되어 있으며(국제사무국을 통한 직접출원만 가능)
 - Article 7(2)에 따른 개별 지정수수료를 부과합니다.
 - Article 11(1)(a)에 따라 공개연기를 제한(최장 6개월)합니다.
 - Article 17(3)(c)에 따라 국내법에 따른 최장 보호기간(25년)을 부여합니다.
- ☞ 각국의 국내절차는 <https://www.wipo.int/hague/memberprofiles/#/>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원국 변동 사항

□ 캐나다(Canada) - 개별수수료 변동('20. 1. 1 발효)

- 신규출원시 각 디자인 당 302스위스프랑, 갱신 시 최초 갱신에 대해서는 각 디자인 당 265스위스프랑, 이후 갱신은 무료입니다.
 - * 개별 지정수수료는 각국의 국내 수수료 및 환율 변동에 근거하여 수시로 변동하며 변동사항은 <https://www.wipo.int/hague/en/fees/individ-fee.html> 참조

□ 아르메니아(Armenia) - 보호기간과 표준수수료 변동('19. 12. 13 발효)

- '99년 협정 Article 17(3)(c) 및 공통규칙 Rule 12(1)(c)(i) 관련
 - 국내법에 따른 최대 보호기간을 기존 15년에서 25년으로 확대하고 표준 지정수수료를 제2수준*(국제출원 수수료 기준 참조)으로 선언하였습니다.

□ **터키(Turkey) – 국제등록의 효력일 규정철회('19. 7. 23 발효)**

- 공통규칙 Rule 18(1)(c)(i)(거절기간의 만료일 이후 국내법에 따라 국제등록에 대한 보호부여 발생)에 대한 기존 선언을 철회했습니다.

3 디지털 접근 서비스(DAS)의 확대

□ **한-일 간 디지털 접근 서비스(DAS)의 확대**

- 우선권 서류를 위한 WIPO 디지털 접근 서비스(DAS)가 디자인 출원에 도입됨에 따라, 출원인은 증명된 사본을 제공하는 대신 우선권 서류를 DAS를 통해 교환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2018년 중국과 미국을 시작으로 디자인 출원 건에 대해 DAS를 통한 우선권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시작하였고, 이는 헤이그출원 건이 아닌 직접출원 건에 한정되었으나
- 2020. 1. 1.자로 한-일 간 DAS를 통한 디자인 우선권 증빙서류 교환이 시작되면서
 - 헤이그 출원의 경우 우리나라(1국) 출원 후 일본(2국)을 지정 출원하는 건에 대한 DAS를 통한 서류제출이 가능해집니다.
(2020. 1. 1. 이후 헤이그 출원건에만 해당)
 - * (우리나라→일본)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발급한 WIPO 접근코드가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특허로-공지사항-코드신청 및 이용방법을 참고 바랍니다.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



□ 국제사무국 출원 건의 디지털 접근 서비스(DAS)의 확대

- 국제사무국에 출원된 헤이그 출원을 선출원으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대해
 - (기존) 국제사무국에서 Contact Hague 등을 통해 우선권 증빙서류 발급(유료) 후 직접 지정국에 제출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 외에도
 - 2020. 1. 1.부터 DAS를 통한 우선권증빙서류의 전자적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제사무국 Contact Hague(<https://www3.wipo.int/contact/en/hague/>)를 이용바랍니다.

4 헤이그 시스템 계약당사자 현황

□ 헤이그협정 가입 계약당사자 현황

- 2019. 12월 말 현재, 헤이그 협정 가입국은 73개, 1999년 개정협정에 가입한 계약당사자는 63개입니다.

국가코드	국가명	국가코드	국가명
AL	알바니아(Albania)	LT	리투아니아(Lithuania)
AM	아르메니아(Armenia)	LU	룩셈부르크(Luxembourg)
AZ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LV	라트비아(Latvia)
BA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Bosnia and Herzegovina)	MC	모나코(Monaco)
BE	벨기에(Belgium)	MD	몰도바(Republic of Moldova)
BG	불가리아(Bulgaria)	ME	몬테니그로(Montenegro)
BN	브루나이(Brunei Darussalam)	MK	마케도니아
BW	보츠와나(Botswana)	MN	몽골(Mongolia)
BZ	벨리즈(Belize)	NA	나미비아(Namibia)
CA	캐나다(Canada)	NL	네덜란드(Netherlands)
CH	스위스(Switzerland)	NO	노르웨이(Norway)
DE	독일(Germany)	OA	아프리카 지식재산권기구 (OAPI)

DK	덴마크(Denmark)	OM	오만(Oman)
EE	에스토니아(Estonia)	PL	폴란드(Poland)
EG	이집트(Egypt)	RO	루마니아(Romania)
EM	유럽연합(European Union)	RS	세르비아(Serbia)
ES	스페인(Spain)	RU	러시아(Russia)
FI	핀란드(Finland)	RW	르완다(Rwanda)
FR	프랑스(France)	SM	산마리노(San Marino)
GB	영국(United Kingdom)	SG	싱가폴(Singapore)
GE	조지아(Georgia)	SI	슬로베니아(Slovenia)
GH	가나(Ghana)	ST	상투메프린스(Sao Tome and Principe)
HR	크로아티아(Croatia)	SY	시리아(Syrian Arab Republic)
HU	헝가리(Hungary)	TJ	타지키스탄(Tajikistan)
IL	이스라엘(Israel)	TM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
IS	아이슬란드(Iceland)	TN	튀니지(Tunisia)
JP	일본(Japan)	TR	터키(Turkey)
KG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UA	우크라이나(Ukraine)
KH	캄보디아(Cambodia)	US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KP	북한(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N	베트남(Viet Nam)
KR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WS	사모아(Samoa)
LI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 유럽연합(EM),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OAPI) 지정은 각 28개, 17개 국가를 포함